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32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신장식·임호선

김재원 • 황운하 • 김준혁

김준형 · 서왕진 · 김대식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①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한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조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
	지) ①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
	런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한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조치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